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1. 2 선고 2021가단751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현승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6. 체결된 공유지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20. 1. 14. 접수 제362호로 마친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9. 11. 체결된 공유지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20. 9. 24. 접수 제6378호로 마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C에게 30,039,19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C은 2020. 1. 및 2020. 9.경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 C은 2010. 6. 9.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은 2020. 1. 6. 전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공유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레등기소 접수 제362호로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C은 2020. 9. 11. 전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3항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매매계약(이하 위 2020. 1. 6.자 공유지분 매매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한 후 2020.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레등기소 접수 제6378호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 구레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2020. 1. 및 2020. 9.경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고 보인다.

위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다른 공유자 지분도 매수하였으며, 피고 아버지의 묘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바,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0. 7. 2.경 대출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0. 10. 8.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C과 피고가 2010. 8. 31. 협의이혼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C의 재산내역 및 채무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남 구례군		답 1098㎡ 지분 19분의 2
2. 전남 구례군		답 1269㎡ 지분 19분의 2
3. 전남 구례군		전 67㎡ 지분 19분의 2

- 끝 -

